

# 7.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558號 1994. 8. 5

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물납토지등기부등본
2.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
3. 차액산정근거

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

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6조중 “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9호서식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내지 [별지 제16호서식]·[별지 제18호서식] 및 [별지 제19호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[별지 제20호서식]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 토지매입가격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던 지번별 면적 및 매입가격명세서등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고 복잡한 서식은 정리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〈건설부 제공〉

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